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28945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
	2. [redacted]시 [redacted]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5. 10.
판 결 선 고	2019. 5. 3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redacted]시는 원고에게 3,425,446,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3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396,200,380원 청구 부분에 관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에게 396,20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피고 추가 허가결정 정본 및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진행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05. 3. 21. [redacted]구 C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B은 2006. 3. 22.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해 [redacted]공사(당시는 [redacted] 주식회사였으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redacted]공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보증공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의 부도와 주택보증공사의 건물 소유권 취득

1) [redacted]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중인 2010. 2. 22.경 B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2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3

을 신청하였고, 2010. 3. 24.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2010. 3.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redacted]공사는 환급이행방식으로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후 2010.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고, 2011.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6. 2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redacted]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D가 2013. 10. 4. 낙찰을 받아 2013. 10. 28. 주택보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 제8조에서는 환급이행사업장인 경우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당해세,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을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와 [redacted]공사, 주식회사 D는 2013. 12. 11. 원고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D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승계하고 주식회사 D는 매수인의 지위를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E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지방세 납부

1) [redacted]구청장은 2010. 12. 10.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 1,505,911,500원을 B에 부과 ·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을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2010. 9.부터 2013. 9.분까지의 재산세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3

1,187,662,260원(가산금 포함)도 체납된 상태였다.

2) 피고 [redacted]시는 2012. 7. 20. B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등록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주택도시보증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 수입금 중 지방세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5. 당시까지 체납되어 있던 위 재산세 등과 위 등록세 2,237,784,170원(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redacted]청 담당자로부터 납부기한 2014. 4. 30.까지, 납세의무자 B로 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받아 합계 3,425,446,43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이하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세금을 '이 사건 지방세'라고 한다). 원고가 2014. 4. 28.자로 교부받은 이 사건 지방세에 대한 각 납부확인서에도 납세자명이 B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지방세 중 구세인 재산세는 792,591,480원이고, 그 중 50%인 396,200,380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귀속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중랑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착오로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redacted]시는 이 사건 지방세와 이에 대한 납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3

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redacted]시에게 재산세 중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 귀속분 396,200,380원의 반환의무가 없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그 납부를 납세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지방세 고지서에는 납세자가 B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제3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를 납세자인 원고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3

고의 이 사건 지방세 납부는 B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가 B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기 위해 중랑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서와 2014. 4. 28.자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지방세에 대한 각 납부확인서에 납세자명이 B로 명시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가 [redacted]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는 결국 원고가 부담할 금액인 점, ③ 원고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 비용뿐 아니라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포함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확정시키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택보증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B 명의로 납부한 이 사건 지방세의 납입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가 B 명의로 납부한 이 사건 지방세는 원고의 유효한 이행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고 피고가 징수금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03

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박현이

판사 김재승